

일자리 창출 중소기업, 세무조사 유예

(국세청, 2007. 1.)

1. 추진배경

- 국세청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환율하락, 내수부진, 유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·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,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.
 - 특히, **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지난해의 고용증가 10% 이상(최소 10명)에서 금년도에는 5% 이상(최소 1명)으로 조사유예 기준을 대폭 완화**해 영세한 유망 중소기업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.
 - 아울러 조세시효가 임박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'간편조사'로 실시하여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임.

[참 고]

* 간편조사

일반조사에 비해 조사기간이 짧고(절반 수준), 금융추적이나 거래처 조사 등을 하지 않는 서면조사 위주의 간편한 조사

2. 지원대상

구 분	지원대상
<input type="checkbox"/> 서비스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	○ 2005사업연도 기준으로 다음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물류산업 등 제조업 연관 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【참 고】의 「조사유예 대상 생산적 중소서비스업의 범위」에 해당하는 생산적이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서비스업 - 제조업, 광업, 농·축·수산·임업
<input type="checkbox"/>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	○ 2007년도에 생산라인 증설, 사업확대 등으로 상시 근로자(연평균)가 2006년도 상시 근로자 수의 5% 이상 증가한 경우로서 최소한 1명 이상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※ (예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06년 20명 고용한 중소기업이 2007년에 1명만이라도 신규로 상시

	고용하면 해당 ○ 2007년 1.1 ~ 12.31 기간 중에 창업한 중소기업
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 중소기업	○ 2005 사업연도 기준 연간 수출액(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액 포함)이 매출액의 20% 이상인 중소기업
<input type="checkbox"/> 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	○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민간 협력체제로 추진 중인 ‘지능형 로봇 사업단’ 등 「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」 추진사업단 참여업체로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

[참 고] → 위 “ 서비스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” 옆에 위치

* 주업 판정기준

지원대상 업종과 기타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업종의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50% 이상

3. 지원내용

구 분	지 원 내 용	
<input type="checkbox"/>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	○ 수출 중소기업 ○ 생산적 중소기업	1년간(2007.12.31까지) 유예 * 2007년말 경제여건과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연장여부 검토
	○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○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	2년간(2008.12.31까지) 유예 - 지방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3년간(2009.12.31까지) 유예 - 창업 중소기업은 3년간(지방 창업중소기업은 5년) 유예
	○ 2007.1.5 현재 조사가 착수되어 진행중인 기업	증거서류의 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기간 연장 없이 조사를 조기에 종결
	○ 2007.1.5 현재 세무조사 사 전통지를 하고 아직 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기업	납세자의 의견을 물어 그 의사에 따라 조사 연기승인 등 조치
<input type="checkbox"/>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 제공	○ 지원대상기업 중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납기연장, 징수유예,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등 최대한 지원	

4. 세무조사 유예대상 기업에 대한 예외적인 세무조사

○ 세무조사의 유예 지원대상 기업인 경우에도 다음 사유로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무조사 실시

-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
- 조세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(가급적 간편조사 실시)

5.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

- 정상적인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유예하되, 이로 인한 조사여력을 고소득 자영업, 투기성 부동산소득, 구조적 유통질서 문란 업종 등 대표적인 세부담 불균형 세원과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집중투입하여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담보기능을 제고해 나갈 것임.
- 특히, 장부 은닉·과기,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·지능적 조세포탈의 경우는 조세범으로 엄정 처벌하는 등 2007년 세무조사를 양보다 질적인 측면에 역점을 두어 실시할 방침임.

【참 고】 「조사유예 대상 생산적 중소기업의 범위」

구 분		대 상 업 종
□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(10개 업종)	○ 물류산업 (9)	도로화물운송업(603*), 해상운송업(611*), 화물취급업(6310*), 창고업(6320*),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(63913*), 화물운송주선업(63991*), 화물포장업(63992*),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서비스업 (화물검수 및 형량서비스업만 해당)(63999*),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(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)(7129*)
	○ 사업지원서비스업 (1)	산업설비 청소업(75923*)
□ 지식기반 서비스업 (44개 업종)	○ 무역업 (1)	무역업(51*)
	○ 정보산업 (9)	유선통신업(6421*), 무선통신업(6422*), 기타 전기통신업(6429*), 컴퓨터시스템 설계및자문업(7210*),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(7220*), 자료처리업(7231*), 컴퓨터시설관리업(7232*),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(7240*),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(7290*)
	○ 전문기술서비스업 (12)	자연과학연구개발업(7310*), 인문및사회과학연구개발업(7320*),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(7421*), 사업및경영상담업(7422*), 엔지니어링서비스업(7432*), 기술시험·검사 및 분석업(7441*), 기타과학·기술서비스업(7449*), 광

		고대행업(7451*), 기타광고업(7459*), 전문디자인업(7460*), 사진촬영 및 처리업(7491*), 그 외 기타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7499*)
	○ 교육서비스업 (2)	사무관련교육기관(8091*),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(8092*)
	○ 영상산업 (10)	영화 및 비디오제작(8711*),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서비스업(8712*), 영화배급업(8713*), 영화 및 비디오상영업(8714*), 공중파방송업(8721*), 유선 및 위성방송업(8722*), 공연 및 녹음시설운영업(8731*), 공연단체(8732*), 자영예술가(8733*), 공연관련산업(8734*)
	○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(10)	하수처리업(9011*), 분뇨및축산폐기물처리업(9012*), 방사성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(9023*), 공공장소청소 및 유사서비스업(9030*), 일반기계수리업(9211*), 전기·전자·통신 및 정밀기기수리업(9212*), 자동차수리업(9221*), 이륜자동차수리업(9222*), 가전제품수리업(9231*), 기타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(9239*)

※ ()안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번호임